

<p>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조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목적</p> <p>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등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세수증대의 효과는 물론 시유재산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함.</p> </div> <p>I.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1996.10.19~1996.12.24 2. 조사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무국 3. 조사시행위원회 ○ 재무경제위원회</p>	<p>4. 추진경위 ○ 1996.2-1996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의정활동방향에서 제시 ○ 1996.8.30-황인명의원 의 60명이 서울특별시 사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 ○ 1996.9.18-서울특별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 1996.10.12-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의 방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996.10.18-제9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 ○ 1996.10.18-서울특별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p> <p>5. 중점조사 사항 ○ 시유재산 취득 ○ 시유재산 처분 ○ 시유재산 대부 ○ 시유재산 관리실태(현장조사중심)</p> <p>6. 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위원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위원장</th> <th style="width: 15%;">간사</th> <th style="width: 50%;">조사위원</th> <th style="width: 20%;">사무보조직원</th> </tr> </thead> <tbody> <tr> <td>문석진</td> <td>정수화 이양한</td> <td>곽순영, 김광순, 김상남, 김승진, 김신호, 김홍규, 노재동, 박남식, 백남선, 양경숙, 이정의, 황인명, 김승자</td> <td>안석수, 박관수, 김형득, 이경숙, 손해영</td> </tr> </tbody> </table>				위원장	간사	조사위원	사무보조직원	문석진	정수화 이양한	곽순영, 김광순, 김상남, 김승진, 김신호, 김홍규, 노재동, 박남식, 백남선, 양경숙, 이정의, 황인명, 김승자	안석수, 박관수, 김형득, 이경숙, 손해영
위원장	간사	조사위원	사무보조직원								
문석진	정수화 이양한	곽순영, 김광순, 김상남, 김승진, 김신호, 김홍규, 노재동, 박남식, 백남선, 양경숙, 이정의, 황인명, 김승자	안석수, 박관수, 김형득, 이경숙, 손해영								
<p>○ 조사요원입명(해당구 의원이 임명) : 총41명</p> <p>II. 주요 조사활동 사항 1. 토론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일시 : 1996.10.12(09:00~12:00) <input type="checkbox"/> 장소 : 속초시 한화콘도 <input type="checkbox"/> 주요안건 : 세부실시계획 ○ 조사위원 : 16명 ○ 조사기간 : 1996.10.19~'96년도 정기회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 : 시유재산 84,294필지 ○ 조사방법 :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및 조사요원 ○ 조사위원 :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16명 ○ 조사원 위촉 : 41명</p>	<p>2. 조사위원 및 조사요원 설명회 개최 -제1차 설명회 <input type="checkbox"/> 일시 : 1996.11.7. 10:00~11:20 <input type="checkbox"/>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3층 소회의실 <input type="checkbox"/> 안건 : 서울특별시 사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 요령 및 유인물 배부 <input type="checkbox"/> 준비물 ○ 각 구별 시유재산 전산목록 ○ 각 구별 지도 ○ 사진 필름 ○ 조사복명서 서식 ○ 조사집계표 서식 -제2차 설명회</p>										

<p>□ 일시 : 1996.11.12 10:00~11:20</p> <p>□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3층 소회의실</p> <p>□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11.7.~11.12. 현재까지 현장조사와 관련한 문제점 토론 ○ 구지번이 많아 지번 찾기가 곤란함. ○ 구·동사무소에 협조를 부탁 ○ 사진촬영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많음. <p>- 제3차 설명회</p> <p>□ 일시 : 1996.11.20. 10:00~11:00</p> <p>□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3층 소회의실</p> <p>□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11.7.~11.19. 현재까지 시유재산 현장조사와 관련한 문제점 토론 ○ 시유지를 매입하고도 권리절차를 밟지 못한 시민이 있음.(조치요망) ○ 점용료를 조금 납부하고 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음. ○ 시유지 목록에 누락된 지번이 있음.(등촌동 517-49, 517-1) ○ 사진촬영을 하기가 곤란함. <p>3. 조사위원 집행부 사무실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6.11.4. 15:45~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산관리과 ○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관련 서류창고 불량 - 재산관련 자료 전산화의 조속한 완료 촉구 - '97년도 예산에 서류창고 수리비 신청 요구 <p>4. 조사위원 현지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기간 : 1996.11.5~11.20(14일간) ○ 출장장소 : 각 위원별 담당구별 현장 <p>5. 조사요원 현지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1996.11.7~1996.12.24 ○ 조사필지 : 3,609필지(총 84,294 필지의 4.3%) ○ 주요 지적사항 : 819건(조사필지 3,609 중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미정리 698건 - 개인등기 미이전 37건 - 공부누락 24건 - 타기관소유 8건 - 무단점유 47건 - 지번무 5건 <p>6.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 관련 공무원 증인</p>	<p>신문 40명</p> <p>[제1차 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6.12.11(수) 10:59~17:12 ○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출석공무원 :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 : 재산관리과장 - 도로국 : 도로계획과장, 건설행정과장 - 환경관리실 : 환경계획과,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시설과, 재활용과, 공원과, 녹지과, 조경과장 - 문화국 : 문화과, 문화재과장 - 가정복지국 :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청소년과장 - 교통관리실 : 주차계획과장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 주요 지적사항 별도 <p>[제2차 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6.12.12(목) 11:05~17:44 ○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출석공무원 :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국 : 하수행정과, 치수과장 - 지역경제국 : 경제진흥과, 연료과, 농수산유통과장 - 지하철건설본부 총무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부장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한강관리사업소 관리부장 -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 주요 지적사항 : 별도 <p>[제3차 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6.12.13(금) 10:49~17:10 ○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 ○ 출석공무원 :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국 : 주택기획과, 주택개발과, 도시개발과장 - 내무국 : 인사과, 사회진흥과장 - 보건사회국 : 의약과, 사회과장 - 지역경제국 : 노정과장 - 민방위국 : 민방위과장 - 소방본부 : 소방행정과장 ○ 주요 지적사항 : 별도 <p>III.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 문제점</p> <p>1. 관리의 문제점</p> <p>가. 각 재산관리담당관의 시유재산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결여</p>
---	---

<p>○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각 재산관리담당관을 지정하였으며,</p> <p>○ 동 규칙 제3조 및 4조에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관리책임을 지정하였음에도 전 재산관리담당관은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p> <p>○ 각 재산관리관별 서로의 업무가 cross check가 되지 않아 재산이 누락되어도 확인할 길이 없음.</p> <p>○ 시유지를 방치하여 무단점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시세수탈루는 물론 땅을 점용한 지 20년이 되면 개인에게 빼앗기고 마는 실정임.</p> <p>○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복명서를 상세히 기재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p> <p>○ 전산자료에 누락된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p> <p>○ 재산관련 통계가 재산관리총괄부서와 전담부서간의 통계가 서로 틀림.</p> <p>○ 서울시 공무원이 재산관리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주인의식이 없음.</p> <p>○ 시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안되어 있어 확실한 시유지 위치와 점유면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음.</p> <p>나. 재산관련부서 문서보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p> <p>재산관리 주무부서의 문서고를 보면 각 담당자 인사이동시 전임자의 재산관련 문서를 찾는 데 6개월이 걸릴 정도로 문서보관 방법이 허술하고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음. 이는 전자계산소를 통한 전산화 작업을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임에도 업무개선에 무관심하고 또한 만일의 화재 등에 대한 대책도 전연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p> <p>다. 재산관련 대장정리 결여</p> <p>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취득, 처분,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총괄관과 지적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각종 대장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재산관리관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조사한 3,609</p>	<p>필지 중 698필지(19.3%)에 해당하는 토지 지목이 일제시대때부터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현재 주거밀집지역인 마포구 아현동(393-28~3)이 묘지로 되어 있으며, 성동구 용봉동(산 7-2번지)에도 아직까지 수도용지로 되어 있음.</p> <p>라. 재산관리부서의 단일화 결여</p> <p>○ 재산관리부서가 각 국·사업소의 담당관이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재산관리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실태 점검 및 현지확인이 잘 되지 않는 등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유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p> <p>○ 주택개량특별회계 시유재산관리 및 처분은 관할구청장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산관리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인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었음.</p> <p>마. 일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p> <p>○ 지번관리 및 정비가 전연 되어 있지 않고, 체비지 관리상 문제가 많음.</p> <p>○ 시유지를 점용한 자가 점용료는 저렴하게 내고 이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시유재산점용료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폐단을 없도록 하여야 함.(예, 중랑구 면목동 173-99호)</p> <p>○ 시가 시유재산을 사회단체 등에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회단체에 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각한 후 그 단체는 현 시가로 다른 사람에게 고가로 매각할 경우 그 단체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음.(예, 도곡동 군인공제회)</p> <p>○ 목동 중심축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환매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계획개발 효용가치가 무너지고 있음.</p> <p>○ (주)한주가 강남구 도곡동 1307번지 시유지를 70억에 매입하여 '95.8.31. 삼</p>
---	---

<p>성엔지니어링에 다시 150억 근저당 설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삼성엔지니어링에 매각을 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동 917-9 6,743m²를 170억에 육만수가 취득하여 다시 현대에 195억원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건축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현대에 매각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있음. ○ 서울시가 재개발을 하면 실제로 원주민은 20% 정도이고 외지사람이 80%가 되어 실제 원 주민은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안락한 보금자리를 잃고 있으므로 서민을 위한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음. ○ 20년 이상된 장기미시설 공원이 많은데도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빌미로 미시설 공원용지 54.4km²(1,072만평) 추정보상비 4조 2,000억원의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시설공원에 대한 보상없이 1,200억을 들여 OB공장 이적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역적 편중뿐만 아니라 OB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음. ○ 체육관리사업소의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수의계약을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시유재산 점용자에 대하여 도시 서민이 거주와 목적으로 점용한 자와 상가 등을 목적으로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 차등이 필요함. 변상금과 점용료를 부과해도 납부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계속 부과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주거목적의 서민들이 실제 납부할 수 있도록 점용료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 서울시에서 택지 조성을 하면서 체비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정책을 펴지 않고 땅을 팔아서 투용자기급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못임. ○ 하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을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더라도 현재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정 	<p>확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하천점용료 징수 실적도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하천을 자연상태로 보존하지 않고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복개하는데 이는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음. 또한 유수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수지주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고수부지내 매점사용료 부과시 사실상 주변을 많이 침범하고 있음에도 주변 점용 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차구획수에 비례한 임대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 실 : 855대 2억 - 목 동 : 150대 5,800 - 동대문 : 110대 4억 5,000 ○ 동대문축구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문제점에 대한 보수·보강지연으로 이용시민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형사고 방지차원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임. ○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함에 있어 관할구청에서 아파트 마당 등 기존도로를 포함 결정하고, 보상시 시가의 1/3정도만 지급하는 등 부당한 행정을 하고, 감독도 소홀함. ○ 도로사업 시행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는데도 이를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거와 같은 답습행정을 하고 있음. ○ 서울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이 주로 관변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형식에 지나지 않음. <p>※ 시유재산관리실태 현장조사결과 지적사항 목록: 집행부 별도 송부</p> <p>IV. 개선방향</p> <p>가. 재산관련 공부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0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련 장부를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임. ○ 각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변동상황
---	--

<p>을 재산 총괄관에게 변동 즉시 통보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나. 시유재산의 전산화 서울특별시장은 시유재산 관련 공부를 일체 정리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하기 바람.</p> <p>※ 재산관련 전산화 방안 첨부</p> <p>다. 재산관리전문가 양성 ○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 등으로 재산관리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관련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방향을 검토하여 재산관리전문가를 양성하기 바람.</p> <p>라. 재산관리국 신설 ○ 시유재산 물량에 비하여 재산관리 담당직원이 부족하고 모든 보고상에 체계가 없고, 재산관리관별 cross check 기능이 없어 시유재산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산관리국을 신설하여 서울시 재산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임.</p> <p>마. 시유재산 관리 장기계획 수립 ○ 시유재산관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각·매입·대부 등에 대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함. ○ 도시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p> <p>끝으로 이번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시유재산 물량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관련 공부가 정리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각 재산관리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재무경제위원회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음.</p> <p>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시유재산의 주인은 바로 서울시 공무원이다”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구·동직원이 합동으로 정확한 시유재산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고있습니다.</p>	<p>4. 江南東·西幹線道路(冠岳路~銅雀路)路線變更에關한請願(鄭址弘·李基連議員 紹介) (15時 09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江南東·西幹線道路(冠岳路~銅雀路)路線變更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p> <p>建設委員會 盧永爽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盧永爽議員 존경하는議長,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本議員은 강서 제5선거구 출신 建設委員會 盧永爽議員입니다.</p> <p>本議員이 오늘 강남동·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p> <p>본 청원의 요지는 서울에서 입안한 사당로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간선도로 계획노선을 동작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될 당시 93년 11월 19일 주민공청회 때 제시된 검토안이었던 사당로에서 은천길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 요구하는 청원입니다.</p> <p>建設委員會에서는 본 청원안을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p> <p>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현장의 시찰과 소위원회의 회의를 각각 한차례씩 개최하는 등 청원의 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p> <p>그 결과 소위원회 청원심사는 청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청원안 수용을 소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p> <p>建設委員會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을 심사하여 참석위원의 다수결로써 은천로 인근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은천로의 확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합리적이라고 의견이 집약되어 계획중인 사당로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를 잇는 노선을 사당로에서 은천길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인근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청원안을 本會議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p> <p>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p>
---	---